개인정보보호법 판례 발표

서울고등 2017나2073963 –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 및 서울고등 2014나19631 – MAC 주소 및 IP 주소의 개인정보성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이현규 (25.05.08)

목차

- 2017나2073963
 - 판결 개요
 - 해설
 - 의의
- 2014나19631
 - 판결 개요
 - 해설
 - 의의
- 결론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 약학정보원 사건 민사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05.03. 선고 2017나2073963, 2074970(병합)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피고 사단법인 A: 약사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및 실천, 의약품 등의 생산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약국경영관리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피고 사단법인 B: 의약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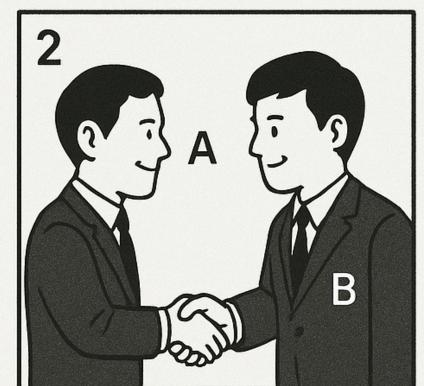
피고 회사 C: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D의 한국 내 자회사로 의약 및 건강 관련 산업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수집,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 환자 및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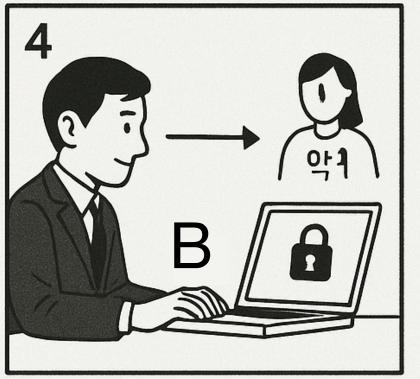
-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1. A가 약국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 2. B가 A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 관리운영권 위탁받음
- 3. 약사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처방전 정보를 입력해 사용
- 4. B가 각 약국에 저장된 처방전 관련 정보를 B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함, 이때 약사들에게 동의를 받음
- 5. B는 C와의 계약에 따라 업데이트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C에게 제공(이때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3단계 방식으로 암호화해 전송)
- 6. 원고들이 개인정보 동의 없이 무단 이용 및 제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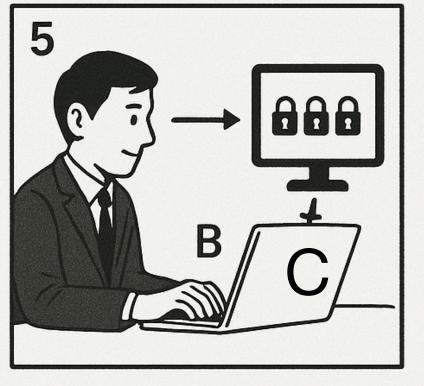
-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1. A가 약국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 2. B가 A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 관리운영권 위탁받
- 3. 약사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처방전 정.
- 4. B가 각 약국에 저장된 처방전 관련 정보를 B에 지 트함, 이때 약사들에게 동의를 받음
- 5. B는 C와의 계약에 따라 업데이트 후 수집된 처방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3단계 방식으로 암호화
- 6. 원고들이 개인정보 동의 없이 무단 이용 및 제공의













1. 사안의 개요 (나) 소송경과 - 1심 판결

주요 쟁점

- 1. 암호화된 처방전 정보('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 2. 피고 재단법인 B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피고 회사 C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1. 사안의 개요 (나) 소송경과 1심 판결
- 1. 개인정보는 '처리하는 자' 관점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로 판단.

2. 암호화 등 비식별화 조치가 적절하면 식별성이 사라져 개인정보가 아님.

3. 다만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면 여전히 개인정보로 본다.

4. 비식별화 적정성은 원본 특성·기술 수준·재식별 유인·접근 통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평가

1. 사안의 개요 (나) 소송경과 - 1심 판결

구분	암호화 방식, 복호화 가능성	개인정보 여부	법 위반 여부
1단계	단순 치환 -> 복호화 용이	0	수집, 제공 모두 위법
2단계	SHA-512 -> 복호화 사실상 불가	X	B 수집 위법 가능, C 제공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 항 제4호)
3단계	SHA-512 + 매칭 테이블 -> 복호화 사실상 불가	X	B 수집 위법 가능, C 제공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 항 제4호)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020.2.4 삭제) 9

1. 사안의 개요 (나) 소송경과 - 1심 판결

1. 제3자가 식별할 수 없고, 피고들이 마케팅 등에 사용X, 유출한 정황 부재

2. 원고들도 언론보도로 알게된 수준 -> 정신적 손해 인정 곤란

3.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측 항소 제기

1. 사안의 개요 (나) 소송경과 - 1심 판결

1. 제3자가 식별할 수 없고, 피고들이 마케팅 등에 사용X, 유출한 정황 부재

2. 원고들도 언론보도로 알게된 수준 -> 정신적 손해 인정 곤란

3.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측 항소 제기

2. 판결의 요지 (가)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 관련

1. 대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1심 판결과 대부분 동일, but 제공받은자가 복호 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나? -> 중요하지 않음

2. 2, 3단계 암호화도 개인정보(매칭 테이블 때문에).

3. 제3자 제공 위법: "비식별 제공" 예외(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활용 불가 + 수집 자체가 불법.

2. 판결의 요지 (가) 손해배상 인정 여부 관련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

=> 정보 수집하고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2. 해설

2016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판단 기준 정리

• 배경

- 2020년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6개 부처가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 드라인」 발간 → 비식별 처리된 정보 활용 허용
- 개인정보성(식별가능성) 판단 원칙
 - '알아볼 수 있는' 주체=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제공받은 자 포함).
 - 처리자가 그 정보만으론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 아님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가능성
 -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식별가능성 인정
 - 객관적, 기술적 요건으로 판단 -> 주관적 의도와 무관

• 의의

• 이러한 객관적 결합가능성 중심 접근은 대상 판결이 제시한 "복호화 의도, 경제적 유인 불문, 매칭 자료 보유 여부로 식별가 능성 판단" 논리와 궤를 같이함

3. 판결의 의의

-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 확인
 - 대상 판결은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히 비식별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기존의 법률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 유지
 -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이 도입된 뒤에도, 익명정보는 여전 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법·판례상의 연속성을 확인해 주었다.
- 남은 과제: 식별가능성 판단의 주체
 - 결합가능성·식별가능성을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중 누구 기준으로 볼 것인지 등 구체적 판단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므로, 향후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MAC 주소 및 IP 주소의 개인정보성 저작권 침해 채증을 위해 MAC 주소 및 IP 주소를 수집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가. 사실관계

- 피고는 프로그램 "오픈캡쳐"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이며, 이 프로그램은 6.7버전까지 무료, 이후 7.0버전부터 유료 화됨.
- 7.0버전부터는 비상업용/개인용에만 무료, 기업 등은 라이선스 구매 필수.
- 업데이트 시 사용자는 "라이선스 약관 동의" 창에 동의해야만 프로그램 사용 가능.
- 동의 후, 사용자 MAC 주소 및 IP 주소가 자동 전송되었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단체 식별 및 라이선스 위반 판단.
- 이에 따라 80여 개 기업·단체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 피고는 반소로 개별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해당사건은 MAC 주소와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요 쟁점임 (※ 저작권 침해 등은 본 발표 범위에서 제외)

나. 소송경과

- 1심 (서울중앙지법 2014.02.21.)
 - MAC/IP 주소의 개인정보성 여부 미판단
 -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인정,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 3심 (대법원 2017.11.23.)
 - MAC/IP의 개인정보성 및 수집 적법성 판단 없음
 - 2심 판결 유지

- 2심 (서울고등법원 2014.11.20.)
 - 사용자 동의하에 수집된 정보이므로 위법 수집 아님
 - 증거능력 인정, 그러나
 - 프로그램 실행 시 일시적 복제는 면책
 - 저작권 침해 불인정, 사용자책임 부정

1. 판결의 개요 판결의 요지

- 사용자 동의 하에 MAC/IP 주소가 자동 전송된 구조로, → 위법 수집으로 보기 어려움
- 수집된 MAC/IP 분석 결과는 정상적인 증거로 인정됨
-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 적용 → 위법 수집 주장만으로 증거능력 부정 불가

2. 해설쟁점 정리

- 핵심 쟁점: MAC 주소 및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 목적, 항목, 보유기간 고지 및 개별 동의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기준:
 -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 가능한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
- -> 핵심은 '식별성' 판단 기준이며, 어떤 경우 해당 정보가 식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3. 판결의 의의

- 해당 판결은 MAC 주소와 IP 주소의 개인정보성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의의 가 있다.
- 하지만 해당 판결은 MAC 주소와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MAC 주소와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유가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결론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식별성(identifiability)

결론 공통점

- 식별성(identifiability) 여부가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의 핵심, 특정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면 개인정보로 간주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다른 정보와 결합 가능성 포함) 해석이 중심 쟁점
- 판단 기준으로 기술적 수준, 제공받는 자의 입장, 결합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됨

결론 차이점

항목	2017나2073963 (암호화된 개인정보)	2014나19631 (MAC/IP 주소)
대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암호화된 정보	MAC 주소 및 IP 주소
식별성 기준	제공받은 자의 매칭 테이블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 개인정보로 인정	암묵적으로 개인정보성 인정하되 명시적 판단은 없음
법원의 입장	객관적 기준을 통해 식별 가능성 여부 판단	정보 실질 처리 가능성 중심으로 접근
식식선 영양	암호화된 정보도 재식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정보로 본 최초 사례	MAC/IP가 특정 기업 또는 사용자를 식별 가능함 을 근거로 판단

"식별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느낀점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윤주호,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 약학정보원 사건」,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전문가협회, 2022, pp.139-146.
- 김종윤, 「MAC 주소 및 IP 주소의 개인정보성 저작권 침해 채증을 위해 MAC 주소 및 IP 주소를 수집한 사안」,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전문가협회, 2022, pp.155-162.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판례백선』, 박영사, 2022.
- NEPLA,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https://www.nepla.ai/case/서울고등법원/2014나19631, 최종검색일: 2025.05.07.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IP주소는 개인정보일까?」, https://m.blog.naver.com/kcc_press/221203038955, 최종검색일: 2025.05.07.
- BigCase, 「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판결」, https://bigcase.ai/search/case?q=2014나19631&page=1&detailCaseNumber=2014나19631(본소), 최종검색일: 2025.05.07.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857, 최종검색일: 2025.05.07.